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053호) 공포 알림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제33053호)이 2022. 12. 9. 자로 불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직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삭제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 등

2. 개정·공포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2. 12. 9. 자 관보, 우리 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053호)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 귀하,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귀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귀하, 한국병원약사회장 귀하, 대한치과병원협회장 귀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주무관	김미경	약무사무관	연가	사무관	대결 2022. 12. 9. 여성구	마약정책과장 전결
-----	-----	-------	----	-----	------------------------	-----------

협조자

시행 마약정책과-15785 (2022. 12. 9.)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06 팩스번호 043-719-2800 / miky1118@korea.kr / 대국민 공개